

산업 회보 2013/2/28 – 레이저의 사용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는 레이저의 사용이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의 면허를 가진 사람의 업무 범위 밖에 있다는 사실을 피허가자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합니다. 캘리포니아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사업 및 전문직업 법) 7320.5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사람을 트리트먼트하는데 있어서 레이저를 사용하는 모든 피허가자들은 경범죄를 범한 것이다.”

이 금지사항은 알려진 건강 위험과 관계없이 모든 레이저 사용에 적용됩니다. 레이저는 면허가 있는 의사, 의사의 감독을 받는 의사 보조자 또는 등록된 간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용사, 전기제모 전문가, 및 미용 전문가들은 의사의 감독하에서도 트리트먼트를 위해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검사관이 살롱에 왔을 때 소위 레이저 (콜드 레이저, 비열 레이저, 헤어 강화 레이저 등)라 불리는 기기를 피허가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별 피허가자와 살롱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